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 가치관의 변화로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군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 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세대 중 월 10,000원 미만 납부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 기회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다.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에 관한 규정 및 보험료의 지원 방법과 시기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험료의 지원중단과 환수,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별첨 참조)

나. 예산관련사항 : 예산담당 협의

다. 사전협의(승인)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장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 라 한다)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